

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. 11. 16 선고 2021가단3735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 고 A중중

소송대리인 B

피 고 1. C

2. D

변 론 종 결 2021. 10. 19.

판 결 선 고 2021. 11. 16.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 C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 별지2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ㄱ) 부분 철골조 비닐하우스 92㎡를 철거하고, 같은 도면 표시 ㄱ, ㄴ, ㄷ, ㄹ, ㅁ, ㅂ,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A) 부분 토지 약 328㎡를 인도하고,

나. 피고 D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지상 별지3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ㄱ) 부분 벽돌조 판넬지붕 우사 약 18㎡ 및 같은 도면 표시 5, 6, 7, 8,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ㄴ) 부분 비닐하우스 약 19㎡를 각 철거하고, 같은 도면 표시 ㄱ, ㄴ, ㄷ, ㄹ, ㅁ,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A) 부분 토지 약 211㎡를 인도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1938. 12. 28.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, 현재까지 이를 소유하고 있는 중중이다.

나. 피고 C은 2005년경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에 별지2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ㄱ) 부분 철골조 비닐하우스 92㎡(다음부터 ‘이 사건 제1 비닐하우스’라 한다)를 설치한 뒤,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비닐하우스 주변의 별지2 도면 표시 ㄱ, ㄴ, ㄷ, ㄹ, ㅁ, ㅂ,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A) 부분 토지 약 328㎡(다음부터 ‘이 사건 제1 토지’라 한다)를 점유 · 사용하고 있다.

다. 피고 D은 2005년경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지상에 별지3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ㄱ) 부분 벽돌조 판넬지붕 우사 약 18㎡(다음부터 ‘이 사건 우사’라 한다) 및 같은 도면 표시 5, 6, 7, 8,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ㄴ) 부분 비닐하우스 약 19㎡(다음부터 ‘이 사건 제2 비닐하우스’라 한다)를 설치한 뒤,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우사 및 비닐하우스 주변의 별지3 도면 표시 ㄱ, ㄴ, ㄷ, ㄹ, ㅁ,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A) 부분 토지 약 211㎡(다음부터 ‘이 사건 제2 토지’라 한다)를 점유 · 사용하고 있다.

라. 한편, 원고는 2020년 11월경 피고들에게 ‘피고들이 각각 무단으로 설치한 이 사건 제1, 2 비닐하우스 및 우사를 철거하고, 이 사건 제1, 2 토지의 인도를 요청한다’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, 위와 같은 내용증명우편들은 그 무렵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제1, 2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, ① 피고 C은 이 사건 제1 토지 부근에 무단으로 설치한 이 사건 제1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, 이 사건 제1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, ② 피고 D 역시 이 사건 제2 토지 부근에 무단으로 설치한 이 사건 제2 비닐하우스 및 우사를 각 철거하고, 이 사건 제2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박영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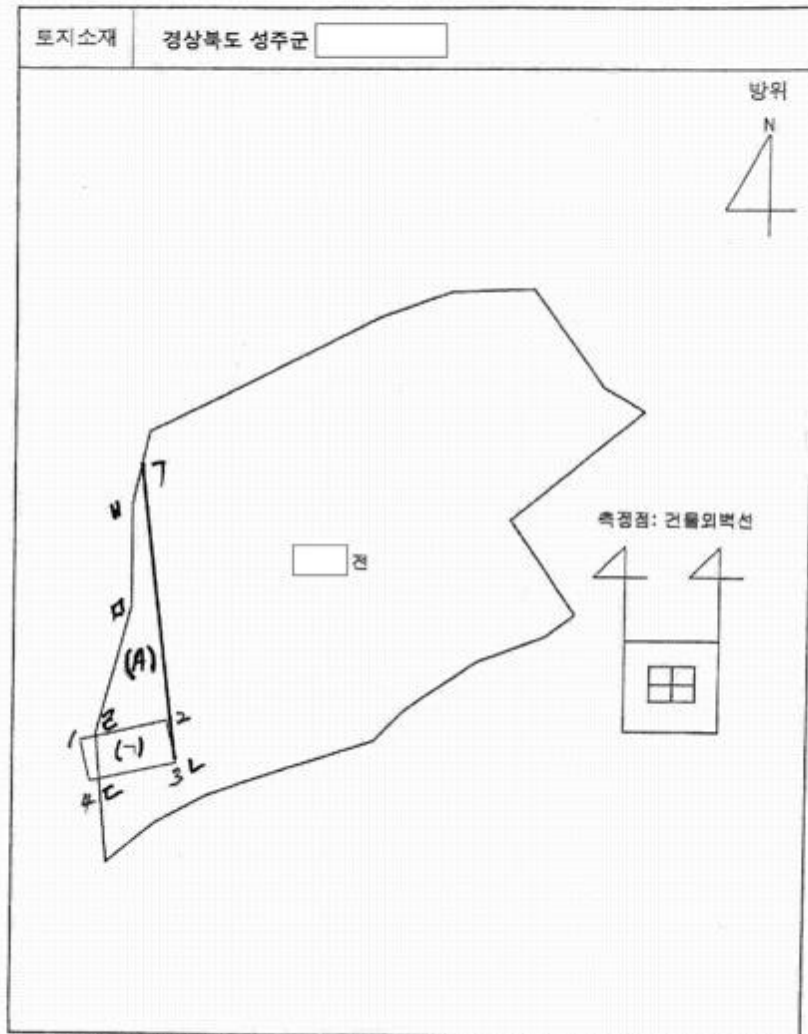
[별지1]

목 록

1. 경북 성주군 E 전 5,184㎡
2. 경북 성주군 F 입야 46,006㎡. 끝.

[별지2]

도면



【유의사항】 : 이 도면은 신청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축소 또는 확대한 참고용 도면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.

[별지3]

도면

